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2조에 따라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3조제4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연구개발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된다.
4.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를 총괄적 또는 단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외부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혁신법을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적용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계정설정 단위)**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관리부서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관리부서는 국민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연구책임자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관리 단위별로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 단,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은 한 명이 여러 공동활용시설의 책임자인 경우에는 여러 개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은 기관 내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제5조(계정의 적립한도)**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은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 연구개발기관 단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공문으로 적립한도 증액을 신청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산학협력단 관리부서를 통해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단, 수탁 과제인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이 가능하다.

- ②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 이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다. 단, 다년도 수탁 과제의 경우 첫 해를 제외한 2차년도부터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지급 전,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하여 해당연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한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국민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기관 지원금,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에서 적립·사용할 때에는 회계 규정 등 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체)** ① 관리부서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 할 수 있으며,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